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0월 31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3.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24.)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11.)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3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3.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서영교의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되어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비록 국내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간이귀화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대한민국에의 정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배우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이민 체류자격(F-6) 등을 통해 국내거주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이 경우 귀화허가 신청 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종합평가를 면제하여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국적취득 요건에서 거주요건은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심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기반 형성 심사, 혼인의 진정성 인정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용민)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를 예우하고 현행 국적취득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최소한의 거주 요건만을 부여하고, 후손 세대를 구분하여 그 배우자의 간이귀화를 허가하고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자에 간이귀화한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로 함(안 제6조제3항 본문).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자에 간이귀화한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를 포함도록 함(제10조제2항제1호).

8.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를 예우하고 현행 국적취득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간이귀화 요건 중 혼인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최소한의 거주 요건만을 부여하고, 후손 세대를 구분하여 그 배우자의 간이귀화를 허가하고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자에 간이귀화한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로 함(안 제6조제3항 본문).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자에 간이귀화한 독립유공자 직계 존속·비속의 배우자를 포함도록 함(제10조제2항제1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 존속·비속”으로 하고, “7년”을 “10년”으로 하며, “주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가 같은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가 「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u>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u> 이고 <u>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7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u> 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u>귀하허가를 받을 수 있다.</u> <u><단서 신설></u>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u>직계</u> <u>존속·비속</u> ----- ----- ----- - <u>10년</u> ----- ----- ---- <u>3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u> ----- ----- ----- --. <u>다만, 배우자가 같은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략)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② ----- ----- ----- ----- ----- ----- ----- ----- ----- ----- -----.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u>제6조제2항 제1호·제2호</u>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1. (현행과 같음)	1. ----- ---- <u>제6조제2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u>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u>제3호</u>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 ----- ----- ----- ----- ----- -----.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 ----- ----- ----- ----- ----- -----. 1. <u>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 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u> 2. ~ 5. (개정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u>제4호</u>----- ----- ----- ----- ----- -----
--	--	---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u>	----- ---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삭 제></u>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같은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같은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
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
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 5. (생략)

③ (생략)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국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
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1. ~ 4.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

-----.

1. ----- 제6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국적심의위원회) ① -----

-----.

1.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간이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 5. (현행 제1호부터 현행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제4호-----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	--